

## 現行 우리나라 林業稅制와 그 問題點<sup>\*1</sup>

裴淳<sup>\*2</sup>

### 1. 우리나라 林業의 當面課題

一般的으로 山林은 廣闊한 自然에 露出되어 있어 그 資源은 恒時 山火, 病蟲, 氣象 또는 人爲等으로 因한 外部危害에 直面하고 있고, 特히 우리나라 山林은 地理的으로나 地質 또는 氣象面에 不利한 立地條件에 處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山林所有規模는 零細하여 林業의 經營單位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林木의 生育條件이 좋은 緩傾斜地나 肥沃한 林地는 耕地化 또는 他用途에 轉用되여 가고 있고 山林에 對한 投資懷姪期間이 超長期이며 投資利潤이 至極히 低位에 있는 等 經濟的 不利點이 많다.

또한 國民經濟發展斗 더부려 山林의 公益機能에 對한 社會的 要求度가 高潮되고 있어 山林에 對한 社會的 制約이 깊이 加해지고 있으며, 保安林, 保護林, 緑地帶, 公園, 觀光地 및 文化財保護地區等의 指定擴大를 通하여 國家的 統制가 强하게 作用하고 있는 等 社會的 與牛 並한 不利하다.

이와 같이 自然的, 經濟的 또는 社會的으로 不利한 與件속에 있는 山林은 그 經營上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안겨다 준다.

- ① 林業投資忌避
- ② 山主經營不在
- ③ 林業生產力減退
- ④ 社會不均衡擴大

첫째로, 林業投資忌避는 山林所有者나 一般資本主들의 共通點 樣相이다.

山林所有者는 大部分 投資能力도 없거나 一部 山林所得이 發生하였다 하더라도 그 山林에 再投資를 하지 아니하여 一般資本主들의 投資對象選擇에 있어서도 여리가지 與件이 不利하고 不安定狀態에 놓여 있는 山林에는 考慮도 하지 않는 것이 現實이다.

둘째로, 山林의 所有規模가 零細한 뿐아니라 그 所有概念自體가 經營과는 遊離되어 있다. 山林投資는 山林所有者나 다른 民間이 投資를 忌避하고 있음으로 거의 政府에 依해서 이루워지고 있으며 政府는 그해 그해

의 財政事情에 따라 山林投資規模와 方法을 달리하고 있어서 投資對象은 充分한 事前檢討 없이 決定되고 있으며 施設地區(林地)의 選定, 施設物(造林)의 選擇等 山林所有者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選定되고 決定되고 있음으로 山林所有者는 그 施設에 거의 關心이 없다. 이와 같은 無感覺은 林業이 지니는 不利한 與件에 因緣한 所產이기도 하지만 또한가지 要因은 山林政策上 山林破壞의 防止라는 命題下에 山林을 非換價性財產으로 變質시킨데에도 있다. 한편 大部分의 山林所有者는 經營에 對하여 無感覺이면서도 史的 慣習에 따르는 所有執念이 크기 때문에 따로 힘 規模를 統合, 擴大시키는데에도 難點이 많다.

셋째로, 國土保全과 山林資源造成이라는 國家的大命題는 山林所有者의 自發的 投資만을 期待할 수 없는 것임으로 國家가 投資해야 하겠기에 財政投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投資는 山林施設의一部分에만 限定되어 있고 그 施設의 保護育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으로 山主의 積極參與가 없는 投資는 實効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現在 利用可能資源은 保續없는 一方의 略奪이 進行됨으로 林業生產力은 漸次 弱體化하여 林業自體의 衰退은 勿論 展望이 어두운 外國資源에 對한 依存度만을 加重시킬 뿐이다.

넷째로, 高度의 成長으로 높아지는 우리나라 產業中에서 唯獨 林業만이 成長은 커녕 停滯乃至 衰退하여 가장 劣勢에 놓여 있다. 어느 한 產業이 劣勢에 빠질 때 다른 產業의 成長速度를 純化시키는 것처럼 우리 現相 林業은 우리나라 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도 적지 않다. 劣勢의 林業은 產業間의 不均衡에 따른 他產業에 影響을 ��칠뿐 아니라, 社會의 不均衡助長에 한몫을 하게 된다. 이러한 問題는 山林政策이나 社會政策面에서 보다 財政政策面에서 講求對處해 나가야 할 課題인 것이다.

以上과 같은 林業이 지니고 있는 問題들은 外形만을 對象으로 解決案을 찾기에 앞서서 그 根源을 解剖對處해 나가야 할 課題인 것이며 이러한 林業의 當面課題은 다음 몇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1 Presently Forest Taxation and the Issues in Korea, Summer Annual Meeting held at Gang Weon National University in August 13, 1976

\*2 Jeung Soon Bae, 韓國林產協會, Korean Forest Product Association

### ① 經營規模擴大

山林所有者 總 176萬名中 1ha未滿所有者가 56%에 이르고 1ha以上 10ha 未滿所有者は 40%이며 全體의 으로 10ha未滿所有者は 總所有者の 96%가 된다. 또한 이들個個人은 그 所有概念부터 經營과는 無關한 狀態이고 投資能力도 欲음으로 最小經營單位라도 될 수 있도록 數人의 山林을 한 經營單位로 하여 共同經營을 할 수 있게끔 誘導하고 한편 一般資本主들이 小規模山林을 取得擴大하여 大規模面地의 林業을 經營할 수 있도록 誘導해 나가야 한다. 現在 山林政策面에서 經營의 團地를企圖하여 营林單位로 普通營林區와 特殊營林區의 設定, 開發地域으로 一般開發地域, 特殊開發地域等을指定하고 있기는 하나 制度運營面에서 官主導型일 뿐 아니라 政策的 財政的 支援體系가 欠如되어 있어서 그 實效를 걱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開發地域指定制를 더 檢討發展시켜 民主導型의 經營의 地域化를 助成하고 그 地域內에서 個個人의 經營規模를 併合 또는 擴大할 수 있도록 山林政策과 財政政策上의 支援體系를 定立시켜 나가야 한다.

### ② 民主導經營體制定立

林業의 不利한 與件과 政策의 未備에 따르는 山林所有者的 經營離脫 또는 無關心을 打開하기 為해서는 制度的 財政的 配慮가先行되어야 한다. 山林所有者が 山林財產權을 自己意思에 따라行使할 수 있는 制度的保障을 約束하고 이 財產增殖에 따르는 政策的 財政的支援이 保障될 때 民主導經營이 可能하다. 이러한 保障이 持續的으로 約束이 될 때 經營規模의 擴大 또는 併合이 容易하며 一般資本主의 林業投資誘致도 可能하다.

### ③ 財政支援 및 租稅支援擴大

民主導型의 誘導나 經營規模擴大誘導에는 山林政策面에서의 制度的 保障과 아울러 財政支援과 租稅支援이 반드시 先行되어야 하며 어느程度 民主導體制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支援을 繼續 擴大해 나가야 한다. 工業團地 또는 都市 未開發地區等開發에는 事前에 地域을 確定하고 充分한 財政支援과 租稅支援을 約束함으로서 民主導的開發이 迅速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山林도 開發地域의 合理的指定과 山林政策面에서나 財政, 租稅面에서 支援約束이 保障될 때 開發參與意慾이 고취되고 民主導經營體制는 굳어져 나갈 것이다.

## 2. 現行 우리나라 林業稅制

어떠한 開發關係法이나 特別法에서 租稅惠澤에 對하여 規定을 하더라도 稅法 또는 租稅減免規制法에 規定하지 않는限 그 惠澤規定은 効力이 없다.

林業租稅에 對하여 山林法과 山林開發法에서도 免稅規定(山林開發法上에는 當初부터 租稅減免規制法에 委任)이 있으나 實地 免稅惠澤은一部分에 不過하다.

山林또는 林業에 課稅되는 稅目은 國稅로서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登錄稅, 營業稅 또는 關稅等이고, 地方稅로서 取得稅; 免許稅 그리고 防衛稅等이 있다.

1961年까지는 1932年에 設定되었던 林野稅가 賦課되었으나 年間 徵稅額이 7百萬원 內外로서 徵收費用이 많이 들고 한편 地方稅目을 減少시키는 同時に 山林所有者的 稅負擔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1961年 이 林野稅制를 廢止하고 1962年부터 徵收하지 않았다.

### 가 林業租稅의 減免

#### (1) 山林關係法令租稅減免規定

山林法(第13條)에서 「營林計劃에 따라 세로이 造林을 한 山林에는 一定期間公課金을 免除」하도록 規定하고 있고 同法 施行令(第16條)에서 公課金을 「所得稅 相續稅 取得稅 等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課하는 金錢上의 負擔一切」라 規定하고 있으며 期間은 20年間으로 規定하고 있다.

山林開發法(第26條)에서는 「租稅減免規制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免稅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 (2) 稅法上의 減免規定

一般稅法上에는 林業租稅의 減免規定은 없고 다만 所得稅法(第46條)에서 山林所得에 있어서의 必要經費(山林의 取得費用, 植林費, 管理費, 伐採費, 其他育成費 또는 林木護理費)는 山林所得金額 計算에 있어서 認定한다는 規定만 있다.

#### (3) 租稅減免規制法上의 規定

現行 林業租稅의 減免惠澤은 이 租稅減免規制法에 規定하는 것에 限하며, 林業租稅의 減免稅目은 所得稅, 相續稅, 贈與稅 및 法人稅等이고 山林組合系에는 法人稅, 營業稅, 登錄稅, 財產稅, 取得稅 및 農地稅等의 免稅가 規定되어 있다.

##### (가) 所得稅免除(第3條)

山林法에 依한 营林計劃造林 또는 山林開發法에 依한 造林을 한 때에는 造林한 날로부터 그所得에 對하여 20年間 所得稅 免除.

##### (나) 相續稅와 贈與稅免除(第3條의 2)

山林開發法에 依하여 세로이 造林한 山林에 對하여 免除.

##### (다) 法人稅免除(第4條 第11項)

山林開發반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製造業을 营為하는 法人 또는 그 株主가 出資한 法人은 例外)에 限하여 山林法에 依한 营林計劃造林이거나 山林開發法에 依한 造林을 한 때에는 造林한 해로부터 그所得에 對하여 20年間 法人稅 免除.

#### 나. 林業租稅의 關係稅法斗 稅率

## (1) 所得稅法

所得稅法에서 所得의 區分을 綜合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山林所得의 4가지로 區分하고, 綜合所得은 利子所得, 配當所得,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및 其他所得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6個 階層만 捷記)

24萬원 以下 課稅標準의 .....	$\frac{8}{100}$
24萬원 超過 48萬원 以下 ..... $16,200원 + 24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	$\frac{10}{100}$
96萬원 超過 120萬원 以下 ..... $108,000원 + 96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	$\frac{18}{100}$
480萬원 720萬원 以下 ..... $1,399,200원 + 480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	$\frac{45}{100}$
2,400萬원 超過 3,600萬원 以下 ..... $11,479,200원 + 2,400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	$\frac{60}{100}$
4,800萬원 超過 ..... $26,479,200원 + 4,800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	$\frac{70}{100}$

## (4) 謾渡所得稅率(土地)

$$\text{謾渡價格} - (\text{取得價格} + \text{必要經費}) = \text{謾渡差益}$$

$$\text{謾渡差益} - [\text{謾渡所得控除 } 70\text{萬원} + \text{謾渡所得特別控除}(上昇適用)] = \text{謾渡所得課稅標準}$$

$$\text{謾渡所得課稅 標準} \times \frac{50}{100} = \text{稅額}$$

## (5) 山林所得稅率(林木의 伐採謾渡)

山林所得總收入金額 - (必要經費 + 山林所得特別控除 50萬원) = 稅額

林業에 關聯되는 所得은 綜合所得(事業所得)과 謾渡所得 山林所得 3가지가 된다.

## (가) 綜合所得稅率

所得金額을 15個 階層으로 나누어 累進稅率을 適用하고 있다.

## (2) 法人稅法

## (2) 法人稅法

林業을 營爲하는 法人은 이 法에 따라 課稅되며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 公開法人의 경우

課稅標準	稅 率
300萬원 以下 .....	$\frac{30}{100}$
300萬원 ~ 500 萬원 以下 ..... $60\text{萬원} + 300\text{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	$\frac{30}{100}$
500萬원 超過 ..... ; ..... $120\text{萬원} + 500\text{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	$\frac{40}{100}$
500萬원 以下 .....	$\frac{20}{100}$
500萬원 超過 ..... $100\text{萬원} + 500\text{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	$\frac{37}{100}$

## (3) 登錄稅法

山林의 所有權取得, 地上權의 設定, 立木의 登錄 또는 登記 其他權利의 登記 또는 登錄에는 이 法에 따라 課稅되어 不動產에 대한 稅率은 다음과 같다.

- 相續으로 因한 所有權의 取得.

農地.....不動產價額의 .....	$\frac{3}{1000}$
其他....." " .....	$\frac{8}{1000}$

- 無償取得時

個人.....不動產價額의 .....	$\frac{15}{1000}$
---------------------	-------------------

宗教團體 및 非營利法人 " "  $\frac{81}{1000}$

## • 其他取得時

農地.....不動產價額의 .....

其他....." " .....

## • 所有權의 保存 .....

" " .....

## • 地上權設定....." " .....

" " .....

$\frac{2}{1000}$

$\frac{10}{1000}$

$\frac{30}{1000}$

$\frac{8}{1000}$

$\frac{2}{1000}$

$\frac{10}{1000}$

$\frac{30}{1000}$

$$\text{相續財產價額} - \left\{ \begin{array}{l} \text{基礎控除} + \\ 600\text{萬원} +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公課金} \\ \text{葬禮費} + \\ \text{債務} \\ \text{年老者: } 60\text{萬원} \\ \text{不具者: } 60\text{萬원}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配偶者: } 500\text{萬원} \\ \text{未成年者: } (10\text{萬원} \times 20\text{才에 达하기 까지의 年數}) + 30\text{萬원} \end{array} \right\} = \text{課稅價額}$$

課稅價額 × 稅率 = 稅額

◎ 稅率(累進 15個階層, 여기서는 6개階層만 掲記)

50萬원 以下.....	課稅價額의	$\frac{10}{100}$
50萬원 超過 100萬원 以下.....	5萬원 + 50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12}{100}$
100萬원 超過 300萬원 以下.....	11萬원 + 100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15}{100}$
1,000萬원 超過 1,500萬원 以下.....	221萬원 + 1,000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35}{100}$
1億원 超過 3億원 以下.....	4,946萬원 + 1億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65}{100}$
5億원 超過.....	3億 1千 946億원 + 5億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75}{100}$

#### (4) 贈與稅

偶者 및 直系尊屬이나 親族으로부터 贈與를 받은 때에  
贈與稅는 贈與財產價額全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되 配  
는一部 控除가 된다.

$$\text{贈與財產價額} - \left\{ \begin{array}{l} \text{配偶者 및 直系尊屬으로부터 받은 때 } 150\text{萬원} \\ \text{다른 親族으로부터 받은 때 } 100\text{萬원} \end{array} \right\} = \text{課稅價額}$$

課稅價額 × 稅率 = 稅額

◎ 稅率(累進 14個階層 여기서는 6개階層만 掲記)

30萬원 以下.....	課稅價額의	$\frac{10}{100}$
30萬원 超過 50萬원 以下.....	3萬원 + 30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15}{100}$
100萬원 超過 300萬원 以下.....	16萬원 + 100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25}{100}$
1,000萬원 超過 1,500萬원 以下.....	316萬원 + 1,000萬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45}{100}$
1億원 超過 2億원 以下.....	5,791萬원 + 1億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70}{100}$
2億원 超過.....	1億 2,791萬원 + 2億원 을 超過하는 金額의	$\frac{75}{100}$

#### (5) 營業稅法

林業에 關係되는 製造業과 販賣業만의 稅率은 다음  
과 같다.

製造業 : 課稅標準의	甲	$\frac{5}{1000}$
	乙	$\frac{10}{1000}$
	丙	$\frac{15}{1000}$
都賣業 : " "	甲	$\frac{5}{1000}$
	乙	$\frac{10}{1000}$
	丙	$\frac{15}{1000}$

小賣業 : " "	甲	$\frac{5}{1000}$
	乙	$\frac{10}{1000}$
	丙	$\frac{20}{1000}$

◎ 稅率區分

製造業 : 甲…精米, 煤炭製造業等  
乙…肥料, 紡織, 製紙, 船舶 軌道車 製造業等  
丙…甲・乙外의 製造業  
都賣業 및 小賣業 :  
甲…穀物, 青果物, 소금, 담배, 煤炭, 鮮魚  
等 販賣業

乙…麥粉, 肥料, 飼料, 書籍(小賣는  $\frac{15}{1,000}$ )  
等 販賣業

丙…甲乙外의 販賣業

#### (6) 關稅法

關稅法上 木材關係品目은 떨나무로 부터 木炭, 原木, 製材木, 슬라이싱材等으로 多樣하게 區分되고 다시 原木은 松柏類, 製材用과 배니아用, 南洋材等으로 細密하게 區分되어 稅率도 多樣하다. 一般的으로 原木과 製材木의 稅率은 10%이며 高級材인 치이크材는 35%, 特別加工(슬라이싱)材는 25%이며 슬라이싱치이크材는 55%의 關稅를 賦課하도록 되어 있다.

#### (7) 地方稅法

林業에 關係되는 稅目은 道稅로서 取得稅와 免許稅가 있으며 市郡稅로서 이들의 附加稅가 賦課되고 그 稅率 또는 稅額은 다음과 같다.

##### (가) 取得稅

$$\text{道稅} \cdots \cdots \cdots \frac{10}{1000} \text{ 但, 서울, 부산} \cdots \cdots \cdots \frac{20}{1000}$$

$$\text{市郡稅} \cdots \cdots \cdots \frac{100}{100}$$

##### (나) 免許稅

免許稅는 第1種에서 第6種까지로 區分하고 伐採許可의 경우 그 許可量에 따라 種別이 區分되고 다시 人口를 基準하여 50萬以上市, 其他市, 郡等으로 하여 課稅額을 달리하고 있다.

##### ○ 伐採許可量에 따른 區分

第1種 1,500m<sup>3</sup>以上

第2種 1,000

第3種 500

第4種 200

第5種 50

第6種 20

##### ○ 稅額(伐採)

人口 50萬市 : 第1種 9,000원 ~ 第6種 1,200원

其他市 : 第1種 6,000원 ~ 第6種 500원

郡 : 第1種 3,600원 ~ 第6種 6200원

#### (8) 防衛稅法

防衛稅法은 1975年 7月부터 1980年 12月末까지의 時限法이며 林野에 對하여는 1976年 1月 1日 納期到來日로부터 80年末까지 이 法이 適用되고 그 稅率은 林野

價額의  $\frac{1}{1000}$ 이다.

### 3. 現行 우리나라 林業稅制上의 問題點

林業租稅에 對한 政策的 配慮는 첫째 林業의 安定과

資本形成을 助長하고 둘째로 待期性資金 또는 企業剩餘金을 林業에 投資하게 하는 民資誘致手段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現行 林業에 對한 租稅는 稅目上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贈與稅等 多樣하게 減免惠擇을 주는 것 같은 印象을 주고 있으나 實質的惠擇은 僅少하다.

相續稅와 贈與稅의 免除는 山林開發法에 依한造林山林만으로 規定되고 있어 山林法에 依한 것은 適用되지 않음으로 法體制上 調和를 잃고 있다.

所得稅는 造林한 山林에서의 所得에 對하여 造林한 날로부터 20年間 免除하도록 規定되고 있어 用材林의 경우는 收穫前에 免稅期間이 終了된다. 特히 山林을 讓渡할 때 그 所得稅는 譲渡價額을 超過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山林이 다른 不動產과는 달리 그 林相이나 그 立地條件에 따라 달리 評價되는 데도 時價標準額은 地域의으로 몸어 一律의으로 定하게 됨으로 譲渡所得稅가 譲渡價額은 上廻하는 矛盾이 생기며, 또한 譲渡받은 者도 登錄稅나 取得稅를 더 내야하는 不合理的點이 있다.

法人稅는 山林開發만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이 造林하였을 때 造林한 해로부터 20年間 造林所得에 對하여 免稅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나 이 法人에 製造業을 營為하는 法人 또는 그 株主가 出資하였을 때에는 그 山林開發法人은 免稅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製造業 法人이나 그 株主의 出資를 除外한 다른 資本主가 果然 山林開發法人에 出資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이 法人稅減免規定 또한 無意味할 뿐이다 한편 林業만은 目的으로 하는 法人이 아닌 다른 法人이 林業에 投資할 때나 이 法人이 다른 林業法人 또는 林業을 하는 個人에게 出資 또는 投資를 했을 때 그 法人所得金額 計算에 있어서 그 投資에 對하여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다.

租稅政策上의 基本方向이 財政需要의 充足과 資本形成의 促進에 主軸을 이루고 있으나 開發財政의 膨脹으로 財政需要의 充足에 置重하게 되기 때문에 經濟의 開發順位를 最下位로 取扱하고 있는 林業에 對한 租稅上의 惠澤을 滿足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租稅面에서 一部의 租稅減免은 他部分의 租稅負擔을 他部分의 租稅負擔을 加重시킨다는 「租稅公平의 原則」上에서도 免稅에 對한 各分野의 希求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理解가 된다.

그러나 林業이 不利하고 弊勢에 빠질수록 經濟發展과 國民生活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함을 再認識하여 林政, 財政, 稅政等 國家政策으로서 林業의 開發支援은 輸出產業에 優位를 두는 것 以上的 國實的 모든 支援

이 있어야 한다.

#### 4. 林業稅制改善方案

林業稅制改善方向은 林業投資効率이 林業의 不利한 特性을 補填하고도 他產業에 對한 投資効率以上이 되게 國家的 次元에서 定立되어야 한다.

現在 林業生產은 國民總生產의 1.5%未滿의 極히 적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어 現在 林業租稅가 財政上에 미치는 影響은 至極히 적다고 할 수 있다.

國民總生產에 對한 租稅負擔率은 1975年度에 16.5% (租稅 1兆 2千 3百億원)로서 國民總生產의 1.5%未滿이라는 林業生產이고 보면 財政政策上에서 林業에 對한 租稅를 全面적으로 免除한다 하더라도 財政需要充足에 影響이 없을 것으로 본다.

한편 林業投資에 對한 國家的 當爲性으로 보아서도 林業에서의 租稅財政으로 林業에 再分配하는 것보다 當初부터 租稅上의 恵澤을 줌으로서 오히려 總財政需要를 輕減시킬 수도 있다.

##### 가.所得稅의 免除

現在 造林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造林한 날로부터 20年間 免除하게 되어 있는 것을 最低 40年으로 延長하여야 하고 林業經營을 目的으로 하는 個人 또는 法人에게 讓渡하는 山林에 對한 讓渡所得稅를 免除하여야 하며 또한 個人이 다른 個人 또는 法人에게 林業經營費로 投資効果을 경우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그 金額을 必要經費로 認定해 주어야 한다.

이는 山林의 財產價值의 提高와 圓滑한 山林去來로經營規模擴大를 助成하고 林業의 企業化를 誘導하는 手段이 된다.

##### 나.法人稅의 免除

造林所得에 對한 免稅期間을 所得稅에서와 같이 40年 以上으로 하고 法人的 適用限界를 撤廢해서 어떠한 法人이던 林業所得에 對하여 免稅되어야 한다.

특히 非林業法人이 林業에 資投할 때 또는 다른 林業

法人 또는 林業經營者에게 林業經營費로 投資効果을 때 이에 對하여는 法人의 所得計算에 있어서 損金으로 算入되게 하여야 한다.

이 法人稅免除은 財政需要에 따르는 稅收蹉跌을 豐慮하는 財政當局의 強力한 反對가豫想되나 林業分野에 對한 財政分配에서 調整하여 나갈 수 있음으로서 이 豐慮는 解消될 것이다.

林業은 他產業과 같이 多數의 個個人이 個別으로 經營하느니 보다 法人이 參與할 때 經營規模의 大團地化와 綜合의인 組織의in 經營이 可能하여 林業振興의 지름길이 되는 것임으로 財政支援과 함께 稅制에서의 支援을 通하여 林業에 積極的參與를 誘導할 수 있으니 林業法人에 對한 免稅와 損金處理는 重要한 것이다.

##### 다.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免除

現行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免除은 山林開發法에 依한 造林山林에만 適用되고 있으나 이는 山林法에 依한 때에도 同一하게 適用되어야 한다.

한편 現行 稅法規程에 造林의 定義가 明白하지 아니함으로 實上 相續 또는 贈與時 不利하게 解釋되기 쉽다.

現行 稅法을 前後 通覽할 때 「造林」을 「人工植栽」의 狹義로 보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는 免稅惠澤을 받을 時點에서는 重大한 問題가 될 것임으로 稅法上의 「造林」이란 用語를 「山林經營」 또는 「林業經營」으로 改正되어야 한다.

山林에 對한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免除은 山林財產을 安心하고 後孫 또는 他人에게 承繼시킬 수 있음으로 繼續의in 資源造成經營과 相續 또는 贈與前의 資源收奪現象을 防止할 수 있는 것이다.

##### 라.登錄稅 및 取得稅의 免除

現行 稅法에서 山林에 對한 登錄稅 및 取得稅의 免稅規定이 全然없다.

이의 免除支援은 山林의 所有規模을 擴大시키고 經營의 團地化를 誘導하는데 必要한手段이 된다.